

1996. 2.

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- 총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개정조례안
- 총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개정조례안
- 총주시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
- 총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
- 총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 결과

개정조례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개정조례안	'96. 2. 1.	'96. 2. 1.	'96. 2. 6.	총무과장
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개정조례안	"	"	"	"
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	"	"	"	세정과장
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	"	"	"	사회과장
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	"	"	"	가정복지 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개정조례안

- 공무원의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휴가제도를 확대하며,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개정조례안

-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를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증 국내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.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

-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고, 노인복지시설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며, 짐형 자동차는 감면율 축소하기 위함.

라.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 개정조례안

-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한우입식 두수를 증가(1두→2두이내) 시켜 자활자립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함.

마.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- 현 화장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,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

- '95. 12. 14일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내무부에서는 각 시.도로 충북도에서는 각 시.군으로 표준안을 작성 통보하므로서, 우리 시에서도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.

나.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

- 대통령령 제14857호('95. 12. 29.)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여비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비지급 기준의 명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상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

- 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은 시·군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준한 것으로서, 주민에 대한 감면수혜확대 방안이며,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라.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

- 사전예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, 주민의 수혜를 늘리는 것으로서, 이의가 없었으며,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게 됨으로 실질적인 보호차원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마.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

- 시체 및 개장유골, 사산오물은 일괄적으로 도내거주자 100%, 타.시도민 300%, 적출률에 대하여는 구분없이 300% 인상안으로, 우리시에 앞서 조례개정을 단행한 마산시, 부산시의 경우 우리시 개정안 보다 배에 가까운 요금으로 인상 하였으며,
- 특히, '94년도 화장장 운영 적자액이 31,469천원, '95년도 37,381천원으로 매년 적자예상액이 증가될 전망에 있어 인상안과 같이 조정할 경우 금후 적자폭을 겨우 면할 것으로 분석되며,
- 인상요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와 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전예고한 금액으로 지역불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사용료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개정조례안

〔질 의〕

- 년가일수중 6년이상 근속공무원은 23일의 연가를 할 수 있는데,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인 10일은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특별휴가를 재직중 1회(10일)인지 아니면 매년 1회(10일) 실시하는 것인지?
-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는 공제한다고 하는데 결근일수 산출방법은?

■ [답 변]

-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재직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 실시하며, 6년이상 근속공무원의 년가일수인 23일에는 포함되지 않음.
- 현재 출근부는 없으나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결근, 출장, 병가, 공가 등으로 구분, 결재후 시행하므로 결근 일수 산출은 가능함.

나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

〔질 의〕

- 학교재단 소유토지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1000분의 3으로 단일화하여 감면하려는 이유는?

■ [답 변]

- 종합토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50까지 누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으로 단일화하여 85m²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.

다.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

[질 의]

- 한우입식을 할 경우 영세농가의 수혜 정도는?

▣ [답 변]

- 송아지를 입식하여 30개월정도면 어미소가 되며, 송아지를 분만하여 약 4개월정도 사육후 영세농가에 입식하게 되고, 어미소는 본인의 소유가 되므로 약 150만원정도 이익이 될 것임.

라.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[질 의]

- 시예산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까지 타지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 함으로 충주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도내, 또한 타시도로 3원화하여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?

▣ [답 변]

- 화장장 사용료를 금번에 300% 인상을 해도 년간 약 23만원정도 수익을 보게 되는데 일시에 많은 요율을 인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으며, 앞으로 3원화로 요율을 책정토록 연구 검토하겠음.

5. 심사결과

- 가 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 .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 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 .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 .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- 가 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
- 나 .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
- 다 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
- 라 .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
- 라 .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